이 보도자료는 2019. 6. 10.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**수원지방검찰청**

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이수권
전화 031-5182-4313

**보 도 자 료**

2019. 6. 10.(월)

자료문의 : 특수부장실
전화: 031-5182-4469
주책임자: 부장검사 김경수

제 목

#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 수사결과

## - 채용대가로 거액 수수한 기관장 등 구속기소 -

- **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**(부장검사 김경수)는 공공기관 채용 대가로 브로커 및 부정채용자 부모로부터 **합계 9,000만 원을 수수한 前職 2선 용인시 의원 출신의 위 공공기관장을 뇌물수수등 혐의로,** 부정채용자 부모로부터 위 **공공기관 취업 청탁과 함께 9,500만 원을 수수한 前 용인시장 특별보좌관**을 변호사법위반등 혐의로 **각 구속 기소**하고, 직접 자녀들의 취업을 청탁하면서 금품을 교부한 **부모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**하였음

  ※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위 기관장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 필

- **수사한 결과,** 구속기소된 위 기관장은 '15. 3.~'16. 3. 총 5회의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거액의 채용대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용인시 내 유력인사로부터 청탁받은 자제나 지인들을 채용하기 위하여 **'맞춤형 채용조건'까지 만들어 경쟁자들을 탈락**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음

- 검찰은 향후에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**채용비리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**할 예정임

##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**A○○(前 용인시 산하기관장, 구속)**

- '15. 7.경~'16. 3.경 B○○으로부터 취업청탁 명목 7,000만원 수수, '15. 3.경 C○○의 딸을 부정채용한 후, 사례금으로 1,000만원 수수, '15. 6.경 D○○의 아들을 최종합격 시켜달라는 청탁받고 1,000만원 수수, 신입직원 14명을 부정하게 채용 **[특가(뇌물), 부정처사후수뢰, 뇌물수수, 업무방해]**

- **B○○(前 용인시장 특별보좌관, 구속)**

- '15. 7.경~'16. 3.경 의제공무원인 A○○에게 취업청탁 명목으로 부모들로부터 9,500만원 수수, A○○에게 7,000만원 교부 **[변호사법위반, 뇌물공여]**

- **C○○, D○○(부정채용자 부모, 각 불구속)**

- '15. 3.경 및 6.경 A○○에게 취업을 부탁하면서 각 1,000만원 교부 **[각 뇌물공여]**

**※ 각 피고인별 구체적 범죄사실은 별첨 1 참조, 범행구조도는 아래 참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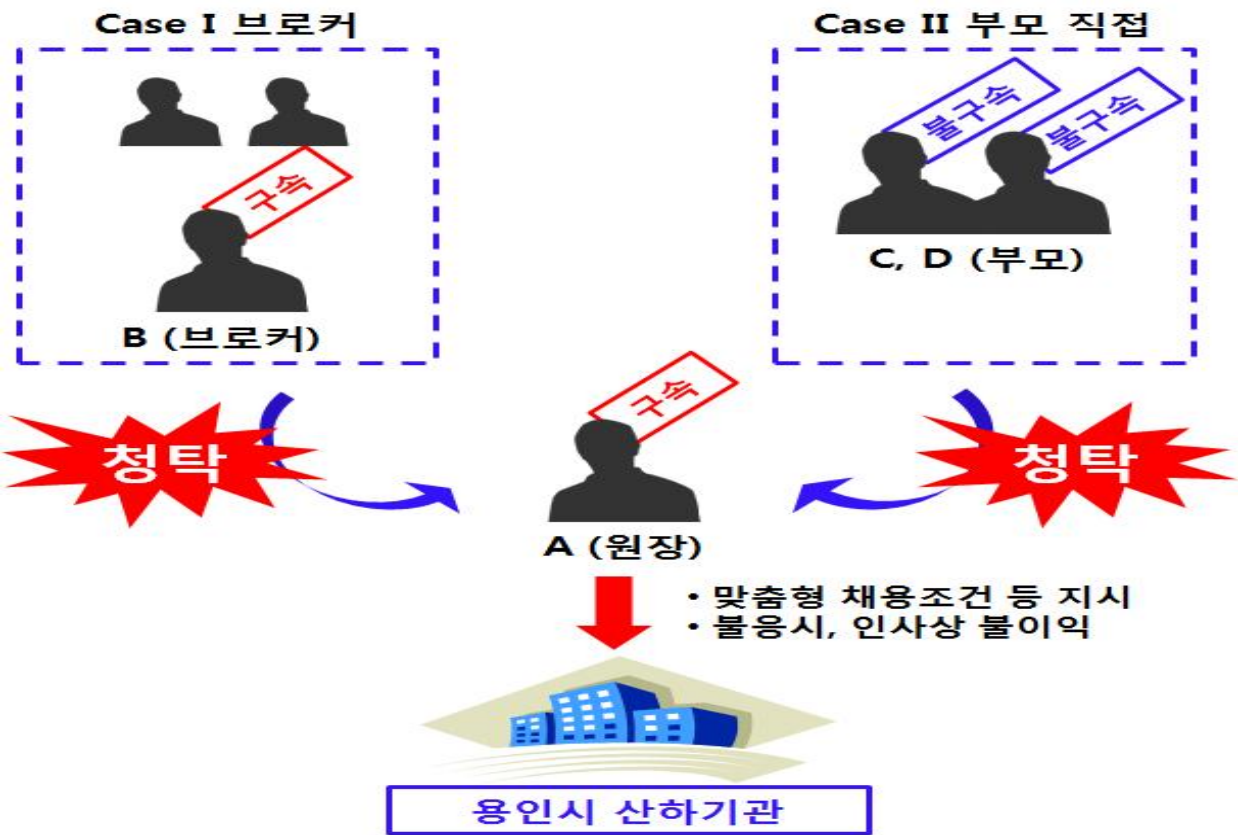

## 2 수사 경과

- ’18. 3. 23.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내사착수
- ’18. 11. 19. 송치(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의견)

  - 위력으로써 부하직원들에게 **총 13명 부정채용 지시**
- ‘18. 12.~’19. 4. 검찰에서 부정채용자 부모들에 대한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한 보강 수사
- ’19. 5. 10. 취업브로커인 **피고인 B○○ 구속 (4. 23. 청구)**
- ’19. 5. 23. 공공기관장인 **피고인 A○○ 구속 (5. 20.청구)**
- ’19. 6. 10. 피고인들 기소

⇒ 총 4명 인지, 2명 구속 기소, 2명 불구속 기소

## 3 수사 결과

### 1. 단순 청탁을 넘어 채용대가로 금품이 오고간 채용비리 적발

- 검찰 수사단계에서 다수의 부정채용자 부모 중 **기관장과 뚜렷한 유대관계가 없어 금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채용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포착**한 후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기관장에게 건넨 **브로커의 존재를 확인**했고, 수사를 확대하여 **기관장에게 직접 금품을 교부한 부정채용자 부모를 적발**함

※ 본건 공공기관은 **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**(‘05. 8. 설립, 이사장 용인시장)으로 2018년도 예산 66억 원, 인원 31명임. **기관장은 관련 법률에 의거, 공무원으로 의제**됨

**2. 청탁받은 응시자의 스펙에 부합하는 '맞춤형 채용조건'을 공고하여, 경쟁자들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사실 확인**

- 구속기소된 기관장 A○○는 **기존의 채용조건을 변경하여 청탁받은 응시자의 스펙에 들어맞는 특별한 채용조건을 추가로 만들어 공고**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함

- **'디자인'**분야 자격요건을 **'인테리어 디자인 및 옥내·외 조명설계 등을 전공한 자'로 제한**하는 특별한 채용조건을 공고함으로써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**『조명인테리어학과』를 개설한 대학을 졸업한 부정채용 응시자만이 단독으로 서류심사에 합격하도록 하고** 최종 채용한 사례

- **'창업육성'**분야 자격요건을 **'인사행정 및 금융업무 유경험자'**로 제한함으로써 **인사행정 경험 없는 은행원, 금융업무 경험 없는 대기업 인사팀장** 등은 두 분야의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고 **대학원 조교 경력**과 **은행지점 3개월 인턴 경험을 보유한 응시자만이 단독으로 면접에 응시**, 최종 채용한 사례 등

## 4 향후 계획

- 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향후에도 **채용비리 사범에 대하여 적극 대처**하겠음

- 취업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**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**할 예정임

※ 부정채용자들 명단 통보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겠음

【 별첨 1 】

# 피고인별 처분 내용

| 순번 | 성 명 | 공소사실 요지(죄명) | 처분 |
|---|---|---|---|
| 1 | **AOO**[64세,<br>'14. 9.~'18. 5.<br>용인시 산하기관 원장,<br>前職 2선 용인시의원<br>('06.~'14.)] | ▸ '15. 7.경~'16. 3.경 BOO으로부터 지인 자녀 甲, 乙의 산하기관 취업청탁을 받고 7,000만 원 수수 **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**<br>▸ '15. 3.경 COO으로부터 딸 丙을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丙을 채용하는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, '15. 5.경 사례금 명목으로 1,000만 원 수수 **[부정처사후수뢰]**<br>▸ '15. 6.경 DOO으로부터 서류심사에 합격한 아들 丁을 최종 합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1,000만 원 수수 **[뇌물수수]**<br>▸ 산하기관 원장으로서,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청탁받은 14명을 부정채용하는 과정에서 위력, 위계로써 서류심사를 담당한 부하직원들 및 면접심사를 담당한 면접위원들의 채용업무를 방해 **[업무방해]** | **6. 10.**<br>**구속기소** |
| 2 | **BOO**[63세,<br>'13.~'17.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회 회장,<br>'18. 7.~'19. 4.<br>용인시장 특별보좌관 | ▸ '15. 7.경~'16. 3.경 의제공무원인 AOO에게 산하기관 취업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취업희망자 甲, 乙의 부모로부터 9,500만원을 교부받음 **[변호사법위반]**<br>▸ '15. 7.경~'16. 3.경 AOO에게 지인 자녀 甲, 乙의 산하기관 취업을 청탁하면서 7,000만 원 교부 **[뇌물공여]** | **5. 28.**<br>**구속기소**<br>**6. 10.**<br>**불구속기소** |
| 3 | **COO**[59세,<br>前 OO 체육회장] | ▸ '15. 3.경 AOO에게 딸 丙을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한 후, 사례금 명목으로 1,000만 원 교부 **[뇌물공여]** | **6. 10.**<br>**불구속기소** |
| 4 | **DOO**[67세,<br>前 OO초등학교 교장] | ▸ '15. 6.경 AOO에게 서류심사에 합격한 아들 丁을 최종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,000만 원 교부 **[뇌물공여]** | **6. 10.**<br>**불구속기소** |